

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 계산

김 춘 과장(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질 의】

정관상 신주의 3자배정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현재 발행한 주식총수가 100만 주이고, 정관의 3자배정규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주식수가 10만주가 이미 있을 때 추가로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 수는 몇 주인지?

【응 답】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서 3자배정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도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관에 3자배정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한도가 신주발행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한 한도는 소진되는 누적적 계산방식에 의해 한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한도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각 한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주식총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하는 3자배정가능주식수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rac{\text{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text{3자배정가능주식수}(X)}{\text{기발행주식수} + \text{3자배정가능주식수}(X)} = \frac{\text{정관상}}{\text{3자배정한도 비율}} \Rightarrow$$

$$\text{3자배정가능주식수}(X) = \frac{\text{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times \text{기발행주식총수} - \text{3자배정 기발행주식수}}{1 - \text{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물론, 이는 한도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해석기준을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의 해석방법이며, 별도의 해석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준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사례에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text{3자배정가능주식수}(X) = \frac{0.2 \times 100\text{만주} - 10\text{만주}}{1 - 0.2}$$

이 산식을 계산하여 3자배정 가능주식수를 도출하면 12만5천주가 됩니다.

회사는 12만5천주의 신주를 3자배정하게 되면 정관을 개정하여 3자배정 한도를 개정할 때까지는 3자배정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주주배정증자를 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게 되면 3자배정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추가로 3자배정할 수 있는 주식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의 장외매매시 5%보고의 기준일

이재혁 대리(조사1팀 공시제도파트)

【질 의】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A는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B에게 장외매매를 통해 이전하려고 합니다. 매도예정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므로 5%보고를 해야합니다. 동 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80억원인데, 이 중 10억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받게되며, 이후 중도금 60억원과 잔금 10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인도는 최종 매매대금인 잔금 지급시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5%보고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5%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응 답】

주식의 장외매매시 5%보고의 기준일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4 제2항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주식의 장외매수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일로 하고, 장외매도에 있어서는 대금수령일 또는 주식 등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3회에 걸쳐 수령하게 되고 또한, 주식의 인도는 최종 대금수령일과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최종의 대금수령과 주식인도가 같은 날 이루어지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기준일을 중도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원에서는 장외매매시 대금수령방법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식 등의 양도가 잔금 지급일에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하는 날을 5%보고을 의무발생일로 보고 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 07(지분)-12, 2007년 4월 발간자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중도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5%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대금 수령시마다 동일 가치의 주식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금수령시점이 보고의무 발생 기준일이 되며, 이 경우에는 최초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에 장외계약의 내용을 5% 보고서식 중 '보유주식 등의 계약'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장외매매시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상황보고'는 '대금수령(지급)일과 주권인수(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일로 하고 있고(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항),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의 기준일도 '대금수령(지급)일과 주권인수(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일로 하고 있으므로, 대금수령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되어 있다면 위 금융감독원의 5%보고 운용례에 따라서 신고의무 발생일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권리금에 대한 회계처리

김도희 대리(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질 의】

본 법인은 2007년 중 지점의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건물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와는 별개로 건물의 이전 사용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원이며, 1년에 4회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때, 권리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일시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조건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한다면, 영업권 상각을 각각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당 법인은 해당 임차계약 완료 후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것도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새로 들어 오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응 답】

임차권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75에 의하면 무형자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은 지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임차권리금 총액에 대해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무형자산 중 '임차권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75.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효용을 가진 종류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나)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다) 저작권

(라) 컴퓨터소프트웨어

(마)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바) 임차권리금

(사) 광업권, 어업권 등

무형자산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상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시점 등 효익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임차계약기간 동안 정액법, 연수합계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상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건물임대차 계약기간

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회계연도 말에 감액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상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71에 따르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무상으로 임차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서이46012-10970, 2002.05.07, 제도46012-10473, 2001.04.06)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세무상으로 임차법인이 계약해지시 받는 권리금은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유권해석(법인22601-3766, 1989.10.07)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해지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 제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지시 받는 권리금은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신미숙 대리(조사2팀 경제조사파트)

【질 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응 답】

법인세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손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예규]

-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393, 2005. 3. 9).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함(서이 46012-12096, 2003. 12. 10).

시 사 경 제 용 어

브릭스(BRICs)

올 한 해 펀드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중국펀드'였다. 차이나 열풍에 이어 내년 펀드시장을 주름잡을 펀드는 무엇일까. '2008년 펀드시장 전망'을 발표한 7개 증권사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배분형 펀드'였다. 배분형펀드란 **브릭스(BRICs)**처럼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섞은 펀드(멀티 지역 펀드)'가 유망하다는 것.

증권사들은 '중국+a국가'에 포함하는 브릭스펀드를 내년 투자 유망한 해외펀드 1순위로 꼽았다. 박진용 삼성증권 상품지원센터 과장은 "10월 이후 중국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홍콩H주식이 20%이상 빠져 투자매력이 높아졌다"며 "다만 중국증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함께 투자하는 브릭스펀드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2007. 12. 27, 조선일보)

브릭스(BRICs)는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Brazil) · 러시아(Russia) · 인도(India) · 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4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기도 하다.